

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9월 14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9월 5일, 정재동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9월 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9월 14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정재동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상위법인 「모자보건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난임 정의 규정상의 부부의 개념에 포함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국가적인 초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난임부부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고, 인용법령을 정비 함.(안 제2조 제5호, 제6호, 제8호)

3. 관계법령

-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도 “난임” 정의 규정상 부부의 개념에 포함하고 “대통령령”을 “모자보건법시행령”으로 정비하여 인용 법령의 명칭을 구체화한 것으로
-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